



국토교통부

# 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환경부장관(폐자원관리과장)  
(경유)

제목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(환경미화차량)의 안전기준 특례요청에 대한 회신

1. 폐자원관리과-4522(2018.8.6.) 및 5019(2018.8.28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2. 귀 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우리부에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요청한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례를 인정하니, 자동차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제작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대상차량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7] 1.가.1) 장비 가) 밀폐형 압축·압착차량 나. 특례사항
    -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배기관 열림방향 차량중심선에 대해 왼쪽으로 90도 이내 허용
3. 아울러, 자동차안전기준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,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	<b>최철민</b>	행정사무관	<b>서형우</b>	첨단자동차기 술과 과장	전결 2018. 9. 7. <b>이재평</b>
협조자					
시행	첨단자동차기술과-1993	(2018. 9. 7.)	접수	폐자원관리과-5293	(2018. 9. 7.)
우	30103	세종특별자치시	도움6로 11	국토교통부	첨단자동차기술과 / <a href="http://www.molit.go.kr">http://www.molit.go.kr</a>
전화번호	044-201-3853	팩스번호	044-201-5585	/ <a href="mailto:kop511@molit.go.kr">kop511@molit.go.kr</a>	/ 비공개(5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